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 6(당)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목 차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II.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5
운영성과표 -----	6
주식 -----	7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비영리조직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재단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 명 철



2022년 2월 22일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제 6(당)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5(전)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이사장 권혁운

본점 소재지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57-170(용호동)

: (전 화) 051)630-5000

재무상태표
제 6(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5(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단위: 원)

과 목	제 6(당)기			제 5(전) 기		
	전체	고유목적사업수익	기타사업	전체	고유목적사업수익	기타사업
자 산						
I. 유동자산	275,596,526	-	275,596,526	320,998,299	-	320,998,299
(1). 당좌자산	275,596,526	-	275,596,526	320,998,299	-	320,998,299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3)	269,919,188	-	269,919,188	318,198,409	-	318,198,409
2. 미수수익	5,605,068	-	5,605,068	-	-	-
3. 당기법인세자산	72,270	-	72,270	2,799,890	-	2,799,890
II. 비유동자산	13,575,000,000	-	13,575,000,000	16,320,000,000	-	16,320,000,000
(1). 투자자산	13,575,000,000	-	13,575,000,000	16,320,000,000	-	16,320,000,000
1. 매도가능증권(주4)	13,275,000,000	-	13,275,000,000	16,020,000,000	-	16,020,000,000
2. 장기금융상품(주3)	300,000,000	-	300,000,000	300,000,000	-	300,000,000
자 산 총 계	13,850,596,526	-	13,850,596,526	16,640,998,299	-	16,640,998,299
부 채						
I. 유동부채	-	-	-	-	-	-
II. 비유동부채	-	-	-	-	-	-
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5)	269,991,458	-	269,991,458	320,998,299	-	320,998,299
부 채 총 계	269,991,458	-	269,991,458	320,998,299	-	320,998,299
순 자 산(주6,11)						
I. 기본순자산	14,070,000,000	-	14,070,000,000	14,070,000,000	-	14,070,000,000
1. 기본재산	14,070,000,000	-	14,070,000,000	14,070,000,000	-	14,070,000,000
II. 보통순자산	5,605,068	-	5,605,068	-	-	-
1. 잉여금	5,605,068	-	5,605,068	-	-	-
III. 순자산조정	(495,000,000)	-	(495,000,000)	2,250,000,000	-	2,250,000,000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주7)	(495,000,000)	-	(495,000,000)	2,250,000,000	-	2,250,000,000
순 자 산 총 계	13,580,605,068	-	13,580,605,068	16,320,000,000	-	16,320,000,00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3,850,596,526	-	13,850,596,526	16,640,998,299	-	16,640,998,29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영성과표

제 6(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단위: 원)

과 목	제 6(당)기			제 5(전) 기		
	전체	고유목적사업수익	기타사업	전체	고유목적사업수익	기타사업
I. 사업수익	371,074,557	65,000,000	306,074,557	228,181,604	-	228,181,604
1. 투자자산수익	371,074,557	65,000,000	306,074,557	228,181,604	-	228,181,604
II. 사업비용(주10)	416,476,330	416,476,330	-	320,164,160	320,164,160	-
1. 사업수행비용	404,694,000	404,694,000	-	307,909,550	307,909,550	-
1). 장학사업수행비용	130,000,000	130,000,000	-	151,000,000	151,000,000	-
2). 공익사업수행비용	274,694,000	274,694,000	-	156,909,550	156,909,550	-
2. 일반관리비용	11,782,330	11,782,330	-	12,254,610	12,254,610	-
III. 사업이익(손실)	(45,401,773)	(351,476,330)	306,074,557	(91,982,556)	(320,164,160)	228,181,604
IV. 사업외수익	-	-	-	-	-	-
V. 사업외비용	-	-	-	-	-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5)	300,469,489		300,469,489	228,181,604	-	228,181,604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5)	351,476,330	351,476,330	-	320,164,160	320,164,160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5,605,068	-	5,605,068	-	-	-
IX. 법인세비용	-	-	-	-	-	-
X. 당기운영이익	5,605,068	-	5,605,068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6(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5(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1. 일반사항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이하 "당 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4월 12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고,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재단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 장학금의 지급
- 나. 장학 및 연구활동비 지원사업
- 다.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 라. 자선사업 및 자산사업 지원

1-1. 재단의 출연금

당 재단은 최초 설립시 아이에스동서(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현금 300백만원을 출연 받았으나, 이후 아이에스지주(주)로부터 추가 출연에 의한 당기말 현재 기본재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재산명	종류	수량(주)	출연금액
현금	정기예금		300,000
주식	아이에스동서(주)	300,000	13,770,000
보고기간말 현재 현재기본재산			14,070,000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당 재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기준에 대하여는 비영리회계처리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 재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수익인식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통화, 통화대용증권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채무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합니다.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하고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2-3. 유가증권

유가증권(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취득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의 적정성은 재무제표일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의 시장가액은 재무제표일 현재의 증가를 공정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으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적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과 부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비용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 재단은 이를 준용하였습니다.

한편, 당 재단은 전기까지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자본계정으로 사용하였으나, 당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주석 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 하였습니다.

2-5. 순자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하며,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하며,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됩니다.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2-6.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며,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정보를 주석 11번에 기재하였습니다.

2-7. 법인세비용

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충당할 사업수익을 제외하고는 동 법에 의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8. 추정의 사용

당 재단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의금액, 총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2-9. 성실공익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를 이행하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은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해당 과세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운영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 말하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을 말 합니다.

2-10. 상증법상의 보고의무

1) 출연재산명세의 보고의무

당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운영성과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나.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마.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이행여부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 나.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 다.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라.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마.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3.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3-1. 각 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종류	당기말	전기말	사용제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269,919	318,198	해당없음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300,000	300,000	기본재산
합계		569,919	618,198	

3-2. 각 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사용이 제한된 사항은 없으며, 장기금융상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사용제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식 - 계속

4. 매도가능증권

4-1. 각 보고기간말 현재 투자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주, 천원)							
분류	종목(회사명)	발행총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시가및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식	아이에스동서(주)	30,892,606	300,000	0.97%	13,770,000	13,275,000	13,275,000

<전기>

(단위: 주, 천원)							
분류	종목(회사명)	발행총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시가및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주식	아이에스동서(주)	30,892,606	300,000	0.97%	13,770,000	16,020,000	16,020,000

각 보고기간말 투자유가증권은 기본재산으로 사용제한 되어 있습니다.

4-2. 각 보고기간의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내용과 취득 및 매각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종목(회사명)	기초잔액	증가		감소		기말잔액	실현손익
		(취득 등)	(평가이익)	(매각 등)	(평가손실)		
아이에스동서(주)	16,020,000	-	-	-	(2,745,000)	13,275,000	-

<전기>

(단위: 천원)							
종목(회사명)	기초잔액	증가		감소		기말잔액	실현손익
		(취득 등)	(평가이익)	(매각 등)	(평가손실)		
아이에스동서(주)	9,885,000	-	6,135,000	-	-	16,020,000	-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각 보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채과목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320,998	300,469	(351,476)	269,991
	전기	412,981	228,181	(320,164)	320,998

6. 순자산

6-1. 각 보고기간말 현재 순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과목	고유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	합계
기본순자산			
기본재산	-	14,070,000	14,070,000
보통순자산			
잉여금	-	5,605	5,605
순자산변동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495,000)	(495,000)
합 계	-	13,580,605	13,580,605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2) 전기

(단위: 천원)			
과목	고유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	합계
기본순자산			
기본재산	-	14,070,000	14,070,000
보통순자산	-	-	-
순자산변동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2,250,000	2,250,000
합 계	-	16,320,000	16,320,000

(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 표시된 기본재산과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은 각각 "제약 있는 순자산"과 "제약 없는 순자산"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기부자나 법령에 의해 가해진 사용과 처분에 관한 제약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① 기본재산 : 영구적으로 보유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을 할 수 없는 순자산
- ② 적립금 : 사용목적이나 사용기간 등에 제약이 있으며 동 목적이 충족되거나 기간이 경과되면 처분이 가능한 순자산
- ③ 임의적립금 :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결의로 연구, 장학, 건축, 퇴직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을 위해 내부 유보된 순자산
- ④ 이익잉여금 : 사용과 처분에 관한 제약이 없는 순자산

6-2. 출연받은 재산명세

각 보고기간 중 당 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6-3.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은 출연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재산은 당 재단 정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출연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일 현재 당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재산 총괄표 및 세부목록

(단위: 주, 천원)					
재산명	종별	당기		전기	
		수량	평가액	수량	평가액
현금	정기예금	-	300,000	-	300,000
주식	아이에스동서(주)	300,000	13,770,000	300,000	13,770,000
합 계			14,070,000		14,070,000

6-4. 영구적 제약 있는 순자산의 제약에 관한 사항

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받을수 있으며, 나아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7. 기타포괄손익

7-1. 각 보고기간의 기타포괄손익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비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당기	2,250,000	-	(2,745,000)	(495,000)	거래소 시가평가
	전기	(3,885,000)	6,135,000	-	2,250,000	

7-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5,605	-
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2,745,000)	6,135,000
포괄이익	(2,739,395)	6,135,000

8. 운용소득 및 특수관계자

8-1. 각 보고기간 중 운용소득 및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단위: 천원)	
	평균 운용소득 및 사용실적	
	당기	전기
A. 운용소득	228,182	360,550
B. 성실공익법인 사용기준액(A×80%)	182,545	288,440
C. 운용소득사용실적	351,476	320,164
D. 운용소득사용비율 (C / A)	154.03%	88.80%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8-3. 출연자의 이사선임 현황

당 재단의 등기이사는 총 5명이며, 이중 1인은 출연자이며, 그 이외의 등기이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합니다.

8-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 재단은 각 보고기간 중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내용은 없으며, 또 이들에게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을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각 보고기간 중 당 재단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고, 홍보한 경우(정당한 대가의 수수를 불문함)가 없습니다.

9. 성실공익법인

당 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충족요건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1. 주석 8-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 재단은 해당 과세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운영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9-2. 주석 8-3 에서 설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당 재단의 등기이사 중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장 1인뿐입니다.

9-3. 이익잉여금 처분일 현재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동법 제50조의2 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있으며, 동법 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10.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각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404,694	-	-	-	404,694
장학사업수행비용	130,000	-	-	-	130,000
공익사업수행비용	274,694	-	-	-	274,694
일반관리비용	-	-	-	11,782	11,782
합 계	404,694	-	-	11,782	416,476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307,910	-	-	-	307,910
장학사업수행비용	151,000	-	-	-	151,000
공익사업수행비용	156,910	-	-	-	156,910
일반관리비용	-	-	-	12,254	12,254
합 계	307,910	-	-	12,254	320,164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11. 순자산변동표

각 보고기간말 현재 부문별 순자산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전체(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2020.1.1.(전기초 보고금액)	14,070,000	-	-	(3,885,000)	-	-	-	-	14,070,000	-	-	(3,885,000)
1. 당기운영이익	-	-	-	-	-	-	-	-	-	-	-	-
2.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6,135,000	-	-	-	-	-	-	-	6,135,000
2020.12.31.(전기말 보고금액)	14,070,000	-	-	2,250,000	-	-	-	-	14,070,000	-	-	2,250,000
2021.1.1.(당기초 보고금액)	14,070,000	-	-	2,250,000	-	-	-	-	14,070,000	-	-	2,250,000
1. 당기운영이익	-	-	5,605	-	-	-	-	-	-	-	5,605	-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2,745,000)	-	-	-	-	-	-	-	(2,745,000)
2021.12.31.(당기말 보고금액)	14,070,000	-	5,605	(495,000)	-	-	-	-	14,070,000	-	5,605	(495,000)

12. 재무제표의 승인기관

당 재단의 당기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16일 당 재단의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 될 예정입니다.